

제439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8)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8)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4)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3)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228)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1)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28.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5)
29.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34)
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646)
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797)
3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3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9)

상정된 안건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5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5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5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5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5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5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5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5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5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5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5
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5
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5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5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5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5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8)	5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8)	5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5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4)	5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3)	5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5
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5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1)	5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5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5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5
28.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5)	5
29.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4)	6
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46)	6
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7)	6
3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6
3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6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6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6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6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6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	6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9)	
.....	6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오늘 상정된 28항부터 31항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관련 법안 상정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독소조항이 빠진 것처럼, 정부 대안 입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고 뺐다는 독소조항도 다 끼워 넣기 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 대안 4조 보면 차별이나 상업적 목적 활용이나 고용이나 보험, 신용상 불이익, 마케팅 활용 등을 금지했다고 했는데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 정작 32조(시정조치), 36조(벌칙), 38조(과태료) 조항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악용 소지가 있는 내용을 4조에서는 뺐지만 이것을 제재할 조치를 하나도 담지 않아서 결국 악용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없이 제삼자까지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법 전체적으로 정보주체가 옵트아웃을 요구할 근거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남언니 사건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제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보가 집적화되면 해킹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것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청회 때 정부도 대책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책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집적한 데이터를 2차 활용 기관을 만들어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데이터 처리의 수수료 부과나 징수·지급 명문화 등 이런 의료정보를 유상 거래하고 유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의료 상업화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넘는 내용이지요. 이미 이 관련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나 약사회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정말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안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지 말고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보완 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심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제안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어찌 됐든 이 안은 상정된 만큼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고 또 제정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안건을 다루면서 충분히 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일독해 보고 나서 판단하시지요.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2)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8)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8)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4)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3)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1)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28.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515)

29.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34)
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646)
3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797)
3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3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39)

(10시07분)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같은 제명의 법률안의 경우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수엽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와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아동보호구역 내 필요적 조치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안과 김태호 의원안은 아동보호구역 내 순찰 및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김태호 의원안은 여기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수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빈번하게 보행

하는 도로를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에 대해서는 경찰 순찰 인력 확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는 신중 입장입니다. 이미 경찰청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도시공원·놀이터에 7만 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6만 5000개의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재량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이게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나라 CCTV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경찰서도 그렇지만 구청 들어가서 보시면 CCTV로 전체를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CTV를 그렇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데 아동보호구역까지 이중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여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위 예외에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 변호사 등이 보조인으로 될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규정에 검사가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내용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보호대상아동이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취지로 보호대상아동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오늘 법안 심사에 아동복지법과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서 정비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형사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국회가 이 부분에서 엄정히, 특히 보건복지는 약자를 지키는 법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국회가 앞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서 10월 달부터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실히 챙겨 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엇갈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은 다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도 친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넘어갔을 때 폐이퍼상 이거는 확실하게 송치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재판에 가지만 가족 안에서, 재판 과정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우리가 검찰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요구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검찰에 또 다시 송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 사법체계에서 지켜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건복지 관리에 있는, 관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이 법의 용어 고치는 것에 추가해서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지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기록에도 꼭 남기고 싶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이소희 위원님.

○이소희 위원 저도 이달희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요. 복지부에서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데 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검사의 면담·확인 시에 진술 같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번 검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경찰에 가서 또 진술을 하게 되는, 두 번의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아동의 경우에는 그 경우가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춰서 취약계층인 아동이 보조인을 선임해서 돕고자 하는,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희 위원** 그 개정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개정되는 사안들과 관련해서 발생할 피해들이 예상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이 개정뿐만이 아니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되는 거고, 보완수사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아동들에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가 충분히 지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개정법률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법 집행 과정에서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이소희 위원** 이것 생각을 하시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한테 진술을 하는데 그게 결국 증거 능력이 없을 거고, 그러면 경찰한테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진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진술이 지연될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었을 경우 여러 번 진술을 하는 문제점은 과거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사나 수사를 되도록이면 한 번에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를 들면 아동학대 할 때 경찰이 조사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을 합동조사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개정한 바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조사가 되도록이면 한 번에 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어쨌든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아무래도 아동·청소년·여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개정 입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나왔고,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쨌든 아동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든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든 안 하든, 사건을 덮든 안 덮든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권력기관의 부패에 대해서 중요한 국민적 의구심과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당했고 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해소가 됐었겠지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제는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저희 국회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기관들에게 힘을 많이 주면 사실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국회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저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늘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 고요.

실제로 이번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구글에서 그 불법영상물 촬영 피해자들이 구글에 신고를 하고 삭제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오히려 그 피해 사이트까지 올려 가면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아동, 청소년, 여성 이 약자들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러는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경찰과 검찰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크게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권력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하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법안인 아동복지법은 이 정도로 말씀 나누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朴芝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박지원 위원님.

○**朴芝源** 위원 체계·자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21조 3항에 보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개정 형소법 245조의 13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개정 형소법 245조의 13은 검사의 조사만 담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구 수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형소법 245조의 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별도의 법령에 근거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혼용돼 있어서 조금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아까 이소희 위원님 끝나셨었던 건가요? 안 끝나셨으면 먼저 하시고 하 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예.

○**소위원장 서영석** 안 끝나신 거였어요?

○**이소희** 위원 예,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서영석** 죄송합니다.

○이수진 위원 중복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소희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사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게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정말 취약체인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리고 범죄의 실체가 밝혀진 경우도 사실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안전장치인 것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안전장치를 부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최대한 보건복지부도 피해아동이나 이러한 장애인이 됐든 취약체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차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차관님께서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차관이십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 계시고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한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그리고 피해, 약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최전선에서 차관님께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봤을 때, 성폭력을 당한 아이를 봤을 때 그 누구도 그거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해야 되겠다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맞지요?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아동들은 본인 목소리를 못 내요. 못 내는 경우 많지요. 잘 아시지요, 차관님? 그러면 아동들이 경찰수사에서 경찰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사하다가 구멍이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지요.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검사든 검사가 아니면 다른 누구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구멍이 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목소리를 못 내는 아동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

○한지아 위원 이거 여쭙볼게요. 그러면 경찰들이 모든 아동학대나 아동성폭력 사건을 완벽하게 다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세요? 그건 장담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차관님. 맞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사법체계에, 우리 형사체계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아까 여쭙봤어요. 차관님께서서는 국민을 위해서 아동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계시다고. 이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의 모든 아동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완벽한 수

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마시고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기록에 남는 겁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하시면 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수사와 관련돼서 연루됐을 때……

○**한지아 위원** 경찰이 완벽하게 다 100% 구멍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사람이기 때문です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저는 현 시스템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들이 아무리 악독하더라도 성폭력 당한 아이들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모든 검찰들이 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부패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소위원장 서영석**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거의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냥 자구수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아동,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폭력, 학대를 당했을 때 그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차관님께서 목소리를 안 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역사에서 기록할 거고요. 진짜로 공적인 자리에 있으신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여기 계신 복지위원들도 마찬가지……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사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마약사범 이런 것도 중수청에서 할 테니.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아이들, 목소리 못 내는 그 아이들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시고 저는 이 일부개정법률안의 자구수정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말씀을 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미리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왜? 그걸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ですよ. 차관님께서도 목소리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서영석** 예,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완수사 요구 시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이행 의무(1개월 연장 가능), ‘미이행 시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 외 상급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 요구 가능’.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법은 제가 읽어 보니까 이런 규정예다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즉 개정안의 경우도 검사의 참여를 넣어 주는 것이지 이거 반대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 법은 그것과는 다르다.

○**한지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검사가 그러면 질문을 해서 어

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요.

○소위원장 서영석 자자, 그만하시고요.

○한지아 위원 그러면 밝혀졌을 때 그거를 증거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그 아이는 경찰에게 또 한 번 똑같은 진술을 해야 된다는 말씀……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토론회하면 한번 나가 주세요.

○허종식 위원 우리 형사소송법 바꾸는 게 아니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잠깐만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의견이 있었습시다마는 어쨌든 양당 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형소법 개편에 따라서,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朴芝源 위원 아까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못 드려서, 제21조 3항……

말씀하세요.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소위원회 하다 보면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발언시간을 얻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21조 3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수정안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좀 검토를 해 보긴 했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동찬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문 보시면 지금 현행법이 수사기관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보면 지금 현행은 조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서는 형사소송법 245조의 1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이거는 검사에 붙는 거고요. 뒤에 조사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현행 조문대로 유지해도 특별하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한지아 위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양당 간에 합의 사항인 만큼 그리고 후속조치법인 만큼 빠르게 가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인순 위원 저는 여기에 반대의견 다 얘기했습니다. 나도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는 표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냈습니다.

○이수진 위원 반대의견 기록에 남기셨으니까, 소위는 표결까지는 안 하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식 위원 한지아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이수진 위원 반대하신 걸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4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항 및 제6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1번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을 아동수당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내용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수당 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제출 서류 요구 및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시면 아동수당 지급 결정 전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미결정자로 약칭을 하고 있고 아동수당은 출생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수급 거부를 규정하고 거부 의사 철회 시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철회할 경우에는 다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또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보호자의 제도 인지 여부 및 신청행위에 따른 권리 실현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칭과 관련해서는 결정자라고 돼 있어서 약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부 입장은 수용이고요. 저희가 신청 시기 개선 법률을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공포 후 3개월로 당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전문위원 자구수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지금 아동수당 지급률이 지금은 신청하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지급률이 몇 %쯤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99%입니다.

○이달희 위원 저희 방에서 받기로 99.34%인데 이걸 100%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법을 개정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우리가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내가 노인 수급을 받거나 할 때 국가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아이의 소중함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

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가능합니다.

○이달희 위원 집에서 휴대폰 한번 터치로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은 몇 세에는 몇 세까지 얼마 받고 국가와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 소중하게 낳아서 국가가 이 아이 잘 보살펴라는구나’ 하고 돈이 지급되는 것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와서 이게 무슨 돈인지 막 섞이는 것 하고 어떤 게 정책적인 효과가 더 있고 더 아이를 소중하게 기를 수 있을까요?

서류를 만들어서 주민센터 가고 이런 게 아니라면 출생신고할 때 쑥 하면 휴대폰으로 계속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정책을 팔로우업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국가와 아이를 같이 키우는 존재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66%라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99.34%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이별로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서 환수나 상계나 시효나 이런 규정이 마련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노인이든 아동이든 딱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찢러 넣어 줬을 때? 바로 자동으로 지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줬다가 나중에 ‘저희가 애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하고 다시 구간별로 나이별로 아동수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이달희 위원 그런 실수의 여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번호를 같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계좌번호로 아동수당의 보호자에게 지급이 되게 되고 그 아이가 나이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신청주의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계좌번호를 출생 신고할 때 다시 다 받게 하지만 나중에 계좌번호를 알려……

○이달희 위원 지금 0.6%가 안 받아 왔는데 0.6%는 어떤 계층인 것 확인하셨습니까? 제도를 바꿀 때는 필요성이 확실히 있을 때 제도를 바꾸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가 터치 하나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동수당 대상자구나’, ‘우리 아이가 크니까 돈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을 같이하는 것하고 바로바로 돈이 줄어들면서 그냥 지급되는 것하고 차이가 오히려 아이의 소중함 이런 것은 부모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도 더 그냥 부모가 신청하는 게 훨씬 낫다는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6% 같으면 필요한데 0.6%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0.6% 신청 안 한 사람이 어떤 계층인지 확인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로 들어온 이 돈이 아동수당이라고 부모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 나머지 분들은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나중에라도 이걸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미신청자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외국에 잠시 체류한다든지 이런 분들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국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에 아동수당을 지급 결정을 못 받으신 분이 1만 4636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듭니다. 저는 현금 지급이 이 문제의 해소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출발은 해야 되지 않나,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정부가 알아서 해 줄 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국민 편의 증진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고요.

아동수당이 그동안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쁜 부모들은 잘 못하고 만약에 아프거나 경황이 없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이 출생과 더불어서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 월’이 아닌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실체적 권리를 실현시키는 뜻깊은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또 3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급 결정 전 아동’으로 아동의 약칭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도 대안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신청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혹자는 직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직접 정부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그동안 이것은 신청주의였는데 직권주의라고 표현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당연지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당연지급. 오히려 직권주의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당연지급은 안 맞는 용어 같고…… 그러니까 용어를 저도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직권주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통일이 안 된 것 같고 신청주의는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 반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어쨌든 복지의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동안 사실은 아동수당을 신청주의로 되어 있으면서 신청을 할 때 물론 처음에 계좌번호를 넣어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아동수당을 부모들이 받으면서 일정하게 부모 교육을 하자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아동수당을 국가로부터 받을 때 부모들에 대한,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전과 달리 아동에 대한 어떤 발달과정이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아동을 자녀를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그걸 넣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당연히 지급할 시기에 부모 교육 콘텐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서영석 의원님 발의해 주신 부모 교육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있어서 그것 심사해 주실 때 같이 토론하고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저는 한두 개 궁금한 것 여쭙보고.

여기 13조에 보니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어가면 지급 정지되는 걸로 돼 있네요. 아동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어떻게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출입국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누가 봐야 되는 것, 통보가 와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동이 나가면 출국했다고 복지부로 통보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시스템으로 통보가 됩니다.

○**김기웅 위원** 그게 생각보다는 개인정보에 가까운 건데 막 부처 간에 공유를 하는 거 보지요, 출입국 관련된 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국민이 나가고 들어오고 막 알려 준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겁니까? 부처 간에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지금 자동으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원래 일반 보통 사람은 영장 갖고 가야 보통 알려 주는 게 출입국관리 기록인데 지금 아동의 경우에는 그냥 공유를 한다는 거지요, 부처 간에? 궁금해서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실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또 하나는 본인들이 안 받겠다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난 이것 받고 싶지 않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지급 안 하는 거지요?

지금은 신청주의니까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걸로 해서 안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직권주의가 되면 의사 관계없이 주는 건데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지요. ‘난 싫다’ 이런 것.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장 박찬수** 아동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김기웅 위원 보십시오. 아까처럼 신청하는 게 개인의 어떤 의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된 다라는 말씀들도 계시고 아까 출생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적도록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인데 당연지급으로 당연히 주는 것도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게 불편할까봐 지금 당연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할 때 그냥 간단히 체크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서 ‘아동지급 신청’이란 박스로 해서 계좌 적을 때 체크하면 신청한 걸로 의제해 주는, 그러니까 신청을 별도로 서류 갖고 와서 할 게 아니라 출생신고를 서류 꾸밀 때 아동수당 신청해 놓고 체크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로부터 뭘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계좌 적을 때 체크 한번 하면 신청하는 걸로 우리가 의제를 해 주면 이 문제가 더욱더 아무 불편 없이 해결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계좌를 적어야 된다면세요, 출생신고할 때. 그럼 그 앞에 ‘아동수당 신청’해 놓고 네모 박스 안에 체크하고 계좌 적으면 되는 일인데 그러면 신청주의의 장점도 살리지만 국가가 당연히 주는 부분도 누락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청주의 관련해서 6개 법을 바꾸고 있는데요. 국가가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신청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지급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권리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근데 거부권도……

○김기웅 위원 네가 알아서 거부하라고 하고 주는 걸 당연하게 하는 게 있고 제 생각에는 의사를 존중한다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에서 보면 받고 안 받고 본인의 희망,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지. ‘네 의사 관계없이 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체크하게 하는 게 어려워? 계좌 적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하시는데 ‘너는 무조건 받아야 돼’ 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할 수 있지요, ‘넌 무조건 받아야 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받겠습니까라는 걸 한 번 정도 물어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국가가 자기 일을 안 하는 걸로 한다는 것도 저는 한번,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죄송한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서영석 과정상 일단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신청주의 때문에 행정 인력이 그동안 많이 소요됐잖아요. 직권주의로 바뀌면 행정 인력이 조금 더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여 준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소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위원장 서영석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에서는 노령연금도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

고 나눠 주는 데 소요되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할 정도로 업무가 하중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인건비를. 그럴 정도로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직권주의로 바뀌면 인력들의 업무 하중이 확 줄어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에 행정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아동의 이동 그다음에 아동의 연령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행정인력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첫만남이용권 마저 보고받으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전문위원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4페이지 이하의 수정의견으로 일부 약칭 변경과 보호자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을 첫만남이용권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첫만남 지급 방식을 당연지급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 등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 등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보호자 등이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연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출산 직후 보호자의 별도 신청 부담을 줄이고 수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뒷 페이지 15쪽에 수정의견으로 보호자에 대한 내용을 아동수당과 통일하는 식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드렸고요.

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별지로 해서 부칙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앞에 아동수당법 2개는 이제 의원님 발의 법안이고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만들어진 수정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인 것으로 저희가 적시했고.

또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전문위원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아동수당법 논의할 때 논의를 한 사안과 동일한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 완화와 관련해서 신청 간주 규정에 관한 것으로 소병훈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입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청 간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급여는 지원 대상자 등의 신청이 원칙이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있거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모두 지원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지원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병훈 의원안은 기본원칙에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반면 이수진 의원안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직권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건의 개정안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권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지자체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소병훈 의원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조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급여권을 두텁게 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저 다 하고 하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예,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전문위원 신은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 완화와 관련해서 직권신청에 관한 것으로 안상훈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직권신청의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상훈 의원안은 지원 대상자가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직권신청을 확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성민 의원안은 지원 대상자에게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인순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 등이 거부한 경우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직권신청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만 안상훈 의원안의 경우 위기가구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직권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오히려 급여 제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안의 경우 여러 차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해서 직권신청 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고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있는 ‘금융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현행법 8조 2항의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 동일하게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3건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남인순 의원안을 반영하면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걸 이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5항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 목적이나 범위, 정보 보유 기관 등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에 남인순 의원안을 수정 반영하면서 현행 규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 수정하였고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보 제공의 요청 범위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신속한 급여 지급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심의는 반영하지 않고 현행 직권신청 결정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안 부칙에서 조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직권신청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 중에 특히 금융정보 정보 제공 예외로 두는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드리고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삭제 의견을 냈지만 본인의 정보 제공과 예외로 두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신청주의 절차 개선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급여 수준 자체가 낮아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나 또 수급자가 되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 해결이다라고 보고요. 의무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답변.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저희가 소득 재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지급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권신청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안에 있는 것처럼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다 포괄하지 않고 부양의무자는 제외하고 대상자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 의무지출 확대는 복지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금융정보 말고도 파악하는 사안들이 많을 텐데요. 이건 민감한 정보이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금융정보 제공 예외를 두는 부분은 다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상자에 관해서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지금 복지부나 정부에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자격 확인 기능이 거의 퍼펙트한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신청주의가 아니고 당연지급으로 이렇게 가면 시스템이 그야말로…… 금융정보든 뭐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수급을 그냥그냥 밀어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국가가 이렇게 당연지급 하는 데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주의는 내가 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신청을 못 했으니까 그동안 못 탔구나 이러면 이제 불만이 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호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 책임도 같이 지는 건데 이게 이 정도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복지 혜택을 이렇게 당연지급 할 만큼 퍼펙트하게……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면 이 불만은 신청주의일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예를 들어서 미스테인으로 잘못 나가면 환수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

좋은 거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법 낼 때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어 주신 건데 문제점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집행하는 시·도 그리고 시·군에서 집행하거나 이럴 때 복지부 생각하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일단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499개 기관의 3968개 종류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신청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심사하여 주실 부분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센터를 한 번만 와 봤더라면, 하나의 서비스라도 신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취약계층들은 정신줄을 그냥 놓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이것은 직권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추가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낸 것 보면 긴급하고 예외적인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될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이런 게 아니라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완을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지금 발의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안으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 그다음에 자살자가 발생했거나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자로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굴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법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대통령령의 안입니다.

○**전종덕 위원** 대통령령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서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면 적용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 수정안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조항이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금융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문구를 포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8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5조 3항 2호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12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다 한 항을 더 추가하자는 건가요?

○**이수진 위원** 수정의견에, 5조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서영석** 남인순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아니, 조항이 지금 어디에……

○**이수진 위원** 8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있어요. 여기 넣어 달라……

○**전종덕 위원** 8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8조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제가 지금 전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2페이지의 수정의견에 5조 3항의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에 대통령령에 대한 예시를 해 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페이지……

○**전종덕 위원** 아니, 5조는 급여신청 관련 내용이고요. 금융정보는 8조를 보시면……

○**남인순 위원** 8조, 16페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개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시잖아요?

○**전종덕 위원** 예, 그렇지요. 예외적으로 제한하자.

○**남인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표현상으로 한번 만드셔 가지고,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또 명료화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이 혹시……

○**전종덕 위원** 개인정보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남인순 위원**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12페이지에 있는 5조 3항의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것을 명시화하자라는 거지요?

○**전종덕 위원** 예.

○**남인순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이해되셨지요?

이게 신청을 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요. 이 정보 제공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런데 지금 8조의 대상을 5조 3항에 따른 직권신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동일한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동일한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기웅 위원** 대상이 똑같으니까 5조에 하든 8조든 상관없다 이 말씀……

○**소위원장 서영석** 예, 그런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이해되셨지요?

○**전종덕 위원** 예, 이해는 됐는데……

○**이달희 위원** 그대로 가도 되는 거 같아.

○**소위원장 서영석** 그게 큰 문제가, 어차피 신청할 때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에서도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전문위원 신은호** 위원장님, 저희 맨 마지막에 한 쪽지……

○**소위원장 서영석** 한 쪽지 남았습니까?

○**전문위원 신은호** 예.

○**소위원장 서영석** 22페이지.

○**전문위원 신은호**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특례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안상훈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은 인사상 우대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고 남인순 의원안은 그에 더해서 적극행정 면책 특례 근거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5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일정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그 취지는 유사한데 직권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안의 경우 현행 신청주의를 유지하면서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근거를 신설하는 반면 이수진 의원안은 11조를 전면 개정해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지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는 정보 부족 등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아래 신청 없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자기결정권 및 제도 운영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직권지급은 사회보장급여의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신청주의를 유지하면서 개별 사회보장급여의 성격과 요건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2건의 개정안 취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직권지급이 개별 법률에서 직권지급의 대상과 요건을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안 부칙에서 조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유사한 입법례 있으니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수급권자의 동의 없는 급여의 직권신청에 관한 것으로 안상훈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의 취지는 유사하나 직권신청의 대상, 직권신청 절차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권신청 대상의 경우 안상훈 의원안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위기가구 구성원 등’인 반면 남인순 의원안은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신청 절차의 경우 안상훈 의원안은 ‘사전에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직권신청 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정보 부족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직권신청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안상훈 의원안은 위기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점과 현행 제도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은 수급권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조회 가능한 금융정보의 범위나 이용 목적 등을 명

확히 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조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훈 의원안의 경우에는 직권신청 전에 시도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서, 아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5항 본문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만 관련된 내용인데도 단서에 이와 관련이 없는 제3항과 관련된 예외를 신설하였으며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용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 수정하였고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의 정보는 정보 제공 요청 범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조속한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역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안상훈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두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이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나 표창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등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상훈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이 내용이 비슷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할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관련해서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보장기관으로 하요금 수급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급여가 본래의 생계보장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후견제도와 적용 관계 및 역할 분담을 하위법령이나 운영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급여관리의 지정 대상이나 절차, 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급권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작성하였고, 1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인사상 우대조치는 남인순 의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차관님, 인사상 우대 관련해서 남인순 의원안이 좋다고 하신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비슷한데요, 안상훈 의원안에 인센티브라는 용어가……

○김기웅 위원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보니까 내용 글귀보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거냐 안 정할 거냐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할 수 있다’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당연히 령이 정해지게 되고 그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부처에서 인사점수를 올릴 때 자동적으로 인사상 가점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 그 차이가 실제로는 큰 것 같은데,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쪽을 택하셔야 되고, 그냥 사기만 돋우는 상징적 의미로 그치고 싶으시다면 남인숙 의원안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실제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앞에 걸로 하시고, 그냥 법에 하나 이런 것 있다라고 하고 싶으시면 남인순 부의장님안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차관님 의견이 어떠시냐를 여쭙보는 거예요.

실제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당연히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 우대조치랑 포상 같은 것들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안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남인순 위원 안상훈 의원안에 찬성합니다.

(웃음소리)

○김기웅 위원 아니 차관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하다 보면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사상 좀 복잡한 일이, 저는 궁금해서 여쭙본 겁니다.

○남인순 위원 안상훈 의원안이 좋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실효성이 있게 하세요, 실효성이 있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

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6년 4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소위원장 서영석 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지금 주거급여 할 때 집행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도 관리비, 주거 관리하는 상하수도비나 전기·도시가스 이런 거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복지부는 이렇게 관리비 수급 좋은 데, 시도 이거 전부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수렴했고……

○이달희 위원 이런 지급체계를 짤 때는, 중앙정부랑 또 매칭해서 급여가 나갈 때는 지방정부들의 의견도 다 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서울·인천·경기·경북 이런 데서 반대의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지자체에서 반대의견은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제와 중복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가스·난방비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생계급여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용주거 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같이 공용관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달희 위원 임대아파트의 영세민들은 대체로 생계, 주택 하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주로 사시겠지요? 그러면 그 관리비 항목 안에 전기료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걸 갈라 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주고 관리비 공용은 또 따로 해야 되고, 이 일은 누가 다 합니까? 그리고 이런 관리비가 안 나오는 지금처럼 그냥 다세대 주택에 살거나 이런 분들은 아까처럼 상하수도·전기료 이렇게만 주면 급여가 거기 포함돼서 나가면 되는데 그런 분들 공공의 관리비를,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관리비 영수증 나오면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주거급여를 주는 부분에서 차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들과 확실한 디테일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주거급여는 현재 개별급여 원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 내용이, 지금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4월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중으로 지급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의 일거리를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이 급여 지원 부분에서 행정력이 너무 낭비될 수 있는, 이중으로 또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확실히 좀 들어서 어떻게 이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일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월세를 산다고 그러지요? 요새 청년들은 원룸이라든지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그런 거주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시절이 됐어요.

한 10년 전부터인가 어쨌든 임대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임대인들이. 그래서 아마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좀 고민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리비든 생계비든 전기세든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관리비라는 개념이 실제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임대료에서 못 받는 부분을 관리비에 전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관리비 지급이,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그리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원룸이라든지 관리비를 내야 되는 작은 공간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됐다고 보고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무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 과정에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관리비 구성 항목이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말씀……

○**이수진 위원** 원룸과 그런 아파트랑 다르지요.

○**한지아 위원** 예, 다 다르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거기서 발생한 수급자들 간의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첨언을 조금 하면……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 부분에 답변……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관리비 지급 보장범위와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 형태, 관리비 부담 수준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할 계획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행정비용도 물론 좀 늘어나지만 이런 수급자 간 형평 문제도 현장에서 발생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느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통과됐으니까 우리는 수용보다는 이런 의견,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를 더 지고 또 이런 수급자 간의 형평성, 주거 유형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할 의사 간 충돌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비용이 얼마나 낭비될지 이런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졌다고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고 의견을 내야 되고,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상충이 되거나 어려우면 법을 또다시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해 보고 안 되면 빨리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차관님,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비가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근거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백선희 의원안, 안상훈 의원안 2건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정안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여부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급여 사업자의 책무 준용 그리고 퇴직연금급여의 재원에 사용자 부담금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 지원의 경우에는 백선희 의원안은 그 규정이 없는 반면 안상훈 의원안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책무 준용의 경우에는 백선희 의원안은 없고 안상훈 의원안은 책무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급여 재원의 경우에는 백선희 의원안은 회원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안상훈 의원안은 회원의 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회가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구조인 만큼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나 운용 실패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정부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지만 공제회가 특정 직역의 상호부조를 위한 조직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원 부담을 기초로 운영된다는 점과 정부 지원이 사실상의 보증으로 인식되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급여 사업자의 책무와 관련해서 안상훈 의원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조, 44조, 4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반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정안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자 간의 구조가 다르고 과태료나 벌칙과 같은 제재 규정의 경우 준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급여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부담금도 재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건의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6조의8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추가하고 개정안과 같은 고유식별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법령에 명시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실무 준용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기관을 이직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금 방식으로 유지해서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퇴직연금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금형으로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이라든지 다양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고 각 기금을 위탁받을 자가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10페이지에 수정안으로 제출하셨던 민감정보 관련해 가지고 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는 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

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문구를 삭제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마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을 처리하는 업무를 갖게 되면, 여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전문가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적립금운용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조직·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전문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별도로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여기 사회복지공제회만 별도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 퇴직연금급여를 위탁받아서 운용할 정도의 준비와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은 같이 검토가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때까지 계속심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소위원장 서영석**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것은 왜 삭제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복지정책관 김문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지금 개별 법률에 이렇게 근거를 명시하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구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요건과 감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오늘 계속 위원님들은 더 봐야 된다,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법이 이 안대로 일단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 정부가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선인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만약에 오늘 통과시키실 계획이시면 지금 퇴직연금급여법에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게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한 규정이 수정안에 추가되어야 되고, 말씀하신 사회복지공제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복지부에 주어지는 방식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지금 그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수급권의 보호나 운영에 관한 통보, 운영 실적 제출이 6조의4부터 6조의6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괄적으

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가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행법 9조에도 시정명령이나 감독 권한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권한은 그렇게 유지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실제 공제회가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 봤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들었고 퇴직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략 60% 정도는 지금도 계약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가입 안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합니다.

○전진숙 위원 직접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으셨네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공제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제회에서 이것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공제회는 찬성하겠지요.

○이달희 위원 공제회는 셀프 조사지요.

○전진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협회도 있고……

○소위원장 서영석 공제회는 사업하시는 데잖아요. 사업자 말고 가입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봐야지.

이 부분은 약간 이견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관련한 법들과 상관관계를 잘 살피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차관 법이 심사가 됐는데요. 2차관을 이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판매업자·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13조의2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

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의무 면제에 따른 규제 공백 가능성과 면제 대상 확인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면제 대상을 의료기관에 판매 실적이 없는 자 중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는 의무 면제 여부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규정은 사업자가 의무 면제 여부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하므로 준용 제외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준용 제외 범위를 지출보고서 관련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준용 제외 대상을 같은 조 1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로는 사업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고 별도의 하위 법령이나 행정적 준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면제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점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서영석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예,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차관님. 지금 실제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많은 유통업자들이 다른 판매업자나 관측업자에게 영업활동을 위임하는 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의무 회피와 지출제도의 취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박순헌 당초 발의안에 대해서 산업협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 수용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견본품 제공이라든지 구매 전에 성능 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임대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의견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반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박순헌 예, 저희가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산업협회도 의견 내고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예.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3페이지에 ‘보건복지부는 면제 대상을 의료기관에 판매·임대 실적이 없는 자 중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은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부가 수정의견을 받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복지부가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이수진 위원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그대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수정하더라도 지출보고서를 작성·공개하지 않은 사업자가 면제 대상인지 의무 불이행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수정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의미인지 싶어 가지고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문구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한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다만’ 해서 이렇게 쓰신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다, 해소가 된다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소위원장 서영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반대의견만 좀 기록……

○소위원장 서영석 예,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는 이 사안도 아까 전의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취지로 반대의견을 기록상 남기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정부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며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개최 활성화와 업무 공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특정 부처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촉권자 또한 해당 부처의 장으로 변경될 경우에 위원회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대내외적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입장은 수정 수용입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운영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한 취지이고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은 지금 간사가 차관급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 생명 관련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 대응에 지금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예,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법안으로 착각해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서영석 속기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이 법안의 취지에 관련해 가지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위원이 공식이라는 이유로 저는 대통령 소속을 복지부 소속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생명윤리위원회의 주요 심사 사항을 그동안에도 보고 형식이나 전문위원 수준에서 처리해 왔던 그런 관행이 있었지요. 최근 2015년도에 유전자검사 허용권한이 생명윤리위에서 복지부로 이전된 사례도 있고, 다시 말하면 생명윤리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집행을 해 온 그런 기관이라 오히려 감독의 대상이지 감독을 하는 기구로 편입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타 부처와 관련된, 부처하고 관련된 내용으로도 많이 올라올 텐데,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문제라든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등 생명공학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다른 부처의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복지부 소속이면 다른 부처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요 생명윤리학회나 의료윤리학회 등등 여러 관련 학회에서도, 관련 기관들에서도 또 천주교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입법이라 꼼꼼히 살펴보니까 정부안을 위원님께서 받은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님은 생명윤리나 인권 문제에 아주 혁신적인 분이어서 보건복지위에 있는 것도 대통령실로 갖다 놓자고 할 분인데 이 법안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소리)

첫째, 저희가 생명윤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차관님, 요즘 우리가 AI 관련해서 이런 생명윤리와 또 연결도 되고 물론 그동안 고전적으로 해 오던 태아의 생명윤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첨단의료나 첨단과학이나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연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다부처가 연관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동안 실적이 낮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더 다시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오히려 요구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안에,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7개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47개 위원회 있는데 이 47개 위원회 다 장관님 아니면 차관님이 위원장이실 텐데 이 위원회 안에 하나로 그냥 썩 넣어 버리면 우리나라 산업 분야도 그렇고 또 전체 국민들께서 생명윤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 생명윤리가 바로서야 인권 존엄이나 인간 존엄이나 인권 문제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하기가 정말 힘들다면 오히려 국무총리실에 갖다 놓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지고 와서는 이 일이 진척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 저도.

○소위원장 서영석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생명윤리위원회가 2000년대 초반에…… 차관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였었지요. 그때 생명윤리법이 처음 나오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면서 이게 체세포 복제 이런 것 있다 보니까 종교계 반발이 되게 있었지요? 인권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국가생명윤리 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로 가져간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 국가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지 않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면 이것 생명윤리는 앞으로 종교계 관계도 있고 체세포 복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중요해지지요, 앞으로 갈수록.

이것은 왜…… 옆자리에 계시는 전진숙 위원님이 정부 요청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정말 인권 차원, 종교계, 생명윤리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도 동일한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인간 대상 연구, 잔여배아, 배아줄기세포, 인체유래물 연구, 유전자 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보건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관리는 복지부를 초월하고 다부처가 다 협력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대통령실 산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법을 발의한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개정 내용이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대통령 소속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나는 관계부처 장관을 차관급 회의로 하자고 했는 것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히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 미워측 시 기존 위원의 직무 계속 규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회의를 자주 열고 이래야 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공간이 비게 되면 실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안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정도 선에서는 그 부분은 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여러 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돼 있을 때 사실 많이 개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조금 더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부처의 업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다부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한번 의견을 줘 보시면 좋겠어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허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3년에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되고 국가생명윤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과기부와 복지부 간, 복지부와 과기부 간의 굉장히 큰 정책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년 이상이 흘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 위원회에서 장관 위원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정책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여기에 정책적으로 국

가 정책으로서 장관이 차관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다부처 간에 중요한 정책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리 위원회도 말씀하시지만 저희 47개 중에 대통령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총리 위원회가 4개가 있고 장관 위원회가 현재 8개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차관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총리 위원회에, 제가 지난주에 스포츠심의위원회를 대참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도 80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숫자는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 위원회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지금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에 20년 정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장관이 각 부처의 차관들을, 차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더라도 오히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또 상시적인 개최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부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차관들이 옴으로써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사항은 결국에 부처 간에 협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또는 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로 하면 더 무게가 실리겠지만 또 장관이 주재하는 위원회 역시 가볍지는 않다, 역시 중요한 정책들을 국정으로 논의를 하고 다부처가 같이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한다는 거고요.

특히 생명윤리는 다 아시지만 종교계나 또 학계 이런 데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더 잦은 회의 개최를 위해서도 대통령 위원회는 저희들이 어쨌든 발의를 해 주셨지만 또 중요하다는 점은 거듭 정부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한 번 더 연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윤리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나머지 것을 빼더라도 8조의 5항을 수정하자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전진숙 위원 예.

○이수진 위원 이번에 통과시켜요 아니면 다음에……

○이달희 위원 다음에 계속 심사할 때 같이 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임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저는 한 번 더 계속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면 그러시지요. 동의합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복지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총리실 산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들의 의견까지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0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료자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입장은 신중검토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치료를 전담하는 점과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 종합병원은 보통은 2차 병원이라고 불리고 병원, 의원과 함께 1차 병원, 2차 병원은 종합병원 또 사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지만 3차 병원에 해당합니다. 주로 3차 병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잘 안 되거나 또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중증질환을 주로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증질환 전문화시키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급종합병원이라 해서 상급은 3차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경과도 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또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자체가 중증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난이도, 희귀, 다른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의 진료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병행해서 명칭 개선이 이루어져야 그 명칭 개선의 의미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복지부가 우리 의료체계의 오래된 난제인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저도 김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행정이나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수용성 높게 가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1차·2차·3차 이런 단순 구조로 나누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헛갈립니다.

장애인 등급은 차관님, 제일 중증이 몇 급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5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장애인 등급 나눌 때 제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1급부터 5급까지……

○**이달희 위원**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가장 중증이 몇 급이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1급이 높은 걸로……

○**이달희 위원** 1급이지요? 그런데 병원은 제일 중증환자가 가야 되는 게 몇 차 병원입니까? 3차 병원이지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의료인들은 거기에 종사해 있기 때문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머리에 환하고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 행정도 그렇고 그냥 만만한 것 같은데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병원 선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눈에 한 마디로 딱 들어도 나는 저기, 나는 저기, 병원급 2차, 나는 3차에 바로 가야지, 2차·1차에 가야 되는데 나는 3차로 바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연구하고 계시지요? 27년 몇 월까지 의료개혁 한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달희 위원** 27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민들한테 서베이도 좀 하시고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말씀에 잠깐 하나만 첨언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예,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장애인의 등급은 보통 중증도로 해서 1·2, 5등급까지 하고 중증도가 1등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체계에서는 접근성을 우선 고려하다 보니까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내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측면에서 1차, 두 번째 또 최종적으로 가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게 세계적인 용어인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WHO에서도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1차 의료기관, 클리닉 내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그게 1·2·3차가 아마 프라이머리(primary), 세컨더리(secondary), 터셔리(tertiary)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직역을 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문화적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요. 이달회 위원님 오셔서 새로운 시각이 생긴 건데 장애인 등급하고 일반적인 등급 분류하고 의료기관 분류 기준이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시는 건데.

○전진숙 위원 계속 심사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오죽하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수도권 쏠림을 막아 보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지방의료원과 유사하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휴업·폐업이 미치는 영향을 국가 차원의 보건 의료정책 측면에서 검토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40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1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5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 역시 수정 수용입니다. 상임위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보건 의료정책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의료원법에 폐업·해산 시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쪽에 '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는 자구 수정에 상임위 검토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규정 중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에서의 의료행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주체 중의 하나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2조제4항과 관련해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피의자 출석요구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대신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 수정 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문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희 위원님.

○이소희 위원 질의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피해아동 얘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반대를 하는데……

○허종식 위원 이것 합의가 됐잖아요.

○이소희 위원 예, 질의 말고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비슷한 법안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복지부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정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많은 논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자구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52조 1항 후단에 보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라는 게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송치 전에는 경찰에만 통보하고 송치 후에는 공소청에 통보한다는 뜻입니까? 실무상에 이런 혼선은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경찰청 의견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의견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달희 위원 실무선에서 이렇게 법 해 놓으면 혼선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국조실하고 협의돼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심의에 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아니고 실무선에서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이 되어 놓으면.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완수사권 관련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 사항과 반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률에 대한 진행 또한 반대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는 고도의 의학적 과실 규모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 기능을 박탈 당하고 공소 제기 여부만 결정하는 지방공소청장이 경찰 수사에 대해 적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과실을 따져 보는 것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보완수사권이 배제된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의료사고 심의제도를 운영하면 피해자 구제도 의료인 보호도 모두 실패할 수 있는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이 법의 진행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의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 등 광고를 금지하고 약국개설자에게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규정하며 약국 등 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조항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7조의5제1항입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 등 광고 금지 사항입니다.

첫째, 약국 등 광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 등 광고를 특정한 약국·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등 광고의 정의를 영업상 광고 행위로 한정하거나 단순한 정보 제공·공유 및 언론보도 등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 관련 정보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인지 약국개설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7조의5제2항 금지되는 약국 등 광고 유형 규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 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부 유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걸쳐서 광고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안 47조의6부터 47조의8까지 자율심의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약국 등 광고에 사전심의 및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의무가 약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위법·부당 광고의 확산 정도와 현행 사후 규제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두 가지, 크게 표시·광고 금지 사항과 또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건데요.

먼저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고형, 공장형, 타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런 금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심의기구에 대해서는 이 발의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광고 자율심의기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의료기관·병원과는 다르게 자연인 개인만 개설이 가능하고 동네 약국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일선 약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심의위원회 등 약국 광고 전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심의기구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에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창고형 약국과 공장형, 이런 형태의 약국이 워낙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문제의식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을 생각하면서 법률안을 내게 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조금 더 법률적 정합성을 잘 맞춰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 등의 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약국 개설 단계의 사전 확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개설등록 심사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미제출과 외부경제적 이해관계자와의 경영개입 계약 체결을 등록거부 사유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운 의원안은 일정한 경우에 약국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현희 의원안은 개설등록 및 지위승계신고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한약사회의 개설자격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진숙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 전에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행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자금·운영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설등록 거부사유로 신설되는 개정안 제20조제6항제6호는 실질적인 지배·운영에 이르지 않는 경영 관여 계약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금지되는 비약사의 약국개설행위와 통상적인 계약관계와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설등록 거부는 신청인의 직업수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등록거부의 핵심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다만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김운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면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변경등록 전에 약국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불법개설·면허대여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약국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므로 위원회 소속 심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정하여 개설등록권자와 일

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현행법상 약국 면적에 별도 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330㎡ 초과를 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결과의 법적 효력과 행정청의 구속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약국개설위원회의 위원을 약사만으로 구성할 경우에 약국 개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약사만으로 심의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 및 지위승계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약사회와 한약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전교육이 면허대여를 확인·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직역단체의 개설자격에 관한 의견 제출 절차의 실익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20페이지에서부터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면허대여, 외부 자본의 개입 등 약국 불법 개설 차단을 위한 전진숙 의원님·김윤 의원님·전현희 의원님의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면허 보유 여부,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구내인지 여부, 조제실 및 장비 구비 여부 등만을 확인하고 있는데 면허대여 등에 대한 확인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약사 면허인의 약국 개설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21쪽입니다.

전진숙 의원 발의안 중에 제20조 3항 예 지자체장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데 동의하며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21쪽, 제20조 6항 5호 자료 미제출 시에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제안드린 바와 같이 20조 3항 후단 조문을 추가 반영하여 신청인이 자료 보완 또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로 그쪽에 있는 6호 약국 경영 개입 시 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약국 개설 심사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발의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자체의 현장 적용 시 행정 절차 부담, 신규 개설 예정인 약사의 경제적 자유 제한 여부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소위원장 서영석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같은 얘기 들었는데 차관님, 개정안은 백종헌·서미화 의원안 보면 고의·반복·중대 위반은 그대로 허가 취소하는 거지요? 고의적이고 반복, 중대한 위반은 허가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뭔가 착오가 있으신……

○허종식 위원 여기였어?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소위원장 서영석 정신 차리세요.

(웃음소리)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방금 복지부가 수정의견 지금 주신 거잖아요, 전문위원실하고. 그래서 한 가지는 확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자체가 반려할 수 있는 기준 등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진숙 위원 반드시 지침을 만들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더불어서 제가 발의한 개정안 6호 내용이 지금 하위법령 마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를테면 제가 개정안 발의했던 6호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시설의 임대인, 약국 개설 운영자금의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약국의 개설 운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시설의 임대 또는 자금의 제공 등을 매개로 하여 약국의 개설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약국 운영 성과의 귀속 배분, 약국의 독립적 업무수행 등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계약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법령에.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부령을 따로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실하고 사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부칙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인데 20조 3항은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즉시 적용, 그래서 법이 공포되고 시행하는 그 사이에 이런 창고형 약국들이 한꺼번에 개설되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답이 빨리 안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바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이게 약국 관련해 대형 약국 등의 창고형 약국들로 인해서 지금 의약품 유통 시장이나 또 의약품의 안전성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하위법령을 만들 때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꼭 상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일 때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는데 이게 법 시행 전, 아까는 즉시 시행하는 게 있고 법 시행 전에 복지부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 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하고 함께 시행 전에 이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1항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소위원장 서영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가 안전 상정할 때 디지털 헬스법이 독소조항이 많고 또 의료 상업화와 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 해서 안전 보류를 요청했는데 안전이 상정되게 됐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의 독소조항을 좀 더 완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이 정부 대안 입법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심사를 정부 대안 입법 심사는 의원님들 발의안을 어떻게 심사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거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일단은 보고를 받고요.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이 법은 제정법률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했다 하니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 숙지한 뒤에 각자 생각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종덕 위원** 오늘 심사를 안 하고 설명만 듣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종식 위원** 아니, 이미 상정이 돼 있으니까 상정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오늘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설명을 들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전종덕 위원** 그러면 조항 심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진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허종식 위원** 설명을 듣는 자체가 심의는 심의니까.

○**전진숙 위원** 어쨌든 안전으로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보통 제정법이기 때문에 저희

가 각각 다 일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독을 하고 나서 각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계속심사로 넘겨서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 심의를 할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어쨌든 전종덕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에 문제 제기가 있는지를 아직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과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법률안 관련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건의료정보의 수집·활용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청회 필요성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입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약, 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으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상 개인의 의료·진료 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등에 일정한 법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될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나아가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있고 또 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다수의 부처·단체와 관련되어 있어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에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보의 전송·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보유출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정수용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수정수용 의견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의 수정수용 의견,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 대한약사회 쪽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외국의 상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였고, 9페이지 제정안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은 공통적으로 총칙과 제2장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지원,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등 생태계 기반 조성, 보칙, 별칙 등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해 말씀드리면, 대체로 비슷한데요. 10페이지 보시면 4개 안건 중에서 안상훈·서영석·전진숙 의원안에서는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권칠승 의원안에는 2차활용 지원기관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2차활용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세 가지 의원안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시범사업과 신속처리, 임시허가 이런 실증특례 등의 내용이 있는데 권칠승 의원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정보 활용지원기관은, 권칠승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분 의원안에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이 정부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제가 주요 쟁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의료정보사업, 보건의료정보 통합활용 플랫폼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관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정책의 수립·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분석·제공 및 관계 기관 간 공유 등의 보건의료정보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칠승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정보를 2차활용 지원기관에 제공·연계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고, 또한 보건의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안상훈 의원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인 반면에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은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 관리 및 활용 능력이 뛰어난 병원을 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정보의 처리 주체, 대상, 범위 등이 개별 법률에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통합적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

지부가 보건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한지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쟁점 사항들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을 그냥 죽 저희가 하나씩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정법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서영석 일단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듣고요.

○한지아 위원 쟁점 듣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소위원장 서영석 예, 어차피 정부대안 설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좀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위한 저희 국회 내의 공청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네 명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법안을 세세히 알아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다는 정부 측 입장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도 제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예, 이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주체는 보건의료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보건의료정보를 본인 또는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건의료정보처리자는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송대상정보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사업계획이 활용 목적에 부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삼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진료기록이나 조제기록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에서는 제삼자 전송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으로써 해당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을 해소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정부 측이 정리한 입법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정부대안을 마련해서……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대안을 배포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2일 날 복지부하고 의원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추가 공청회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전종덕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했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요, 법안소위에서 한 것은 아니고 복지부하고 의원실하고 별도의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제시하신 부분은 백종현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공청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들 다 받으셨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표는 저 자료 자체고요. 4단, 5단의…… 안상훈·서영석·권칠승·전진숙 의원님 네 분의 발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안과 정부대안을 함께 비교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네 쪽짜리 자료를 먼저 두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조항을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그러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안의 주요 조항 및 입법 근거입니다.

법률의 명칭은 서영석·권칠승·전진숙 의원님 안을 반영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안합니다.

주요 조항 중에는 제4조에 보건의료정보 활용 원칙이 있는데, 이 규정은 신용정보법 33조와 건보공단단의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지침의 약속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8조 정책거버넌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민·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훈령에 근거하여 현재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10조부터 11조 보건의료정보사업에 대한 조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6조와 압관리법 9조의2 등을 운영하여 정보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및 비용 지원 근거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2020년부터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3개 상종,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이 지정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12조~13조의 2차활용 지원기관에 대한 것은, 2차활용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9조의2를 운영하여 규정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차활용 지원기관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분석센터, 암센터의 암빅데이터센터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4조 사망자 가명정보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개보위 공동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망자 가명정보 활용 관련되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 15조 가명처리에 대한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15조 2항에 대해서는 역시 복지부와 개보위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조 3항은 가명처리 위탁인데 상동이고요.

IRB 심의면제에 대해서는 정부대안에서 과학기술부의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운영했던 가이드라인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조 4항의 가명정보 제공내역 공개 의무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처리 기록의 작성·보관 의무 규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6조 1항은 가명처리 안전성 심의인데요. 역시 복지부·개보위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19조와 20조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19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35조의2 그리고 19조 3항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원칙 예외로서 응급 상황이나 치료 등의 목적에서는 본인 동의 없도록 하는 것들을 신설하였습니다.

19조 4항의 전송요구 대상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의4(전송요구 대상정보의 범위) 조항을 운영하였습니다.

20조 1항의 개인정보 활용기관 지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원용하였고요.

그다음에 20조 1항의 활용기관 지정 기준 강화는 지정요건으로서의 기술적 전문성·보완성·재정능력 이외에 보건의료정보 활용목적에 부합할 것,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4항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별표를 원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1조~23조의 보건의료정보 교류·표준화의 활용 기반은 21조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을 이관하여서 규정하고, 다음 4쪽입니다. 21조 4항 개인보건의료정보 중계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원용하였습니다.

22조 1항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표준화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10조의9를 이관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22조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제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원용하였고요.

23조 전문 공공기관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탁·수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24조부터 30조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해서, 24조 29조까지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과 또 30조에 정책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정

부 대안에서 삭제하고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 등의 규제 특례 조항과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표 1쪽입니다.

저희들 정부 대안을 위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또 간결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인데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개인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제1호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2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 약사법에 의한 조제·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관리로서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행위, 생명윤리법의 유전자검사 관련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다음, 5쪽 3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활용되는 제품으로써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나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 의료제품, 다 건강관리기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등이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그 밖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말한다.

5호 보건의료정보란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다음 정보로서 가 호, 나 호를 규정하였습니다.

6호 개인보건의료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중 보건의료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했고, 7호 보건의료정보주체란 보건의료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보건의료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호 정보보유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의 보건의료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호 개인보건의료정보처리자란 개보법에 해당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호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김기웅 위원 다 읽으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제가 더 간단하게 할까요?

○김기웅 위원 어차피 이게 제정법이라서 재가할 때는 축조심의도 해야 되고, 이게 이

렇게 읽고 개정안처럼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읽고 이 정부안만 갖고 우리가 논의할 수는 없고 각 대안들을 놓고 조문별로 축소심의도 해야 되지만 정부안에 대한 직능단체, 직역단체들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중대하고 말하자면 아주 기본법적인 걸 넣는데 여기서 소위에서 해 가지고 읽고 끝낼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을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는 너무 감사하고 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가서 한번 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는 양당 간사 간에 일단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써서 다 읽지 마시라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더 간단하게……

○소위원장 서영석 우선 민감한 부분이나 쟁점이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정이 됐거나 논의가 됐던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 11호 개인정보의료정보 중계전문기관을 정의하고, 12호 정밀의료, 13호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이란 1차이용을 제외하고 개보법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범위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정의 조항이 좀 길어서 그렇게 정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15쪽 3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시책과 또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이 법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로 두었습니다.

제4조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원칙으로서 1·2항과 또 4개 호를 두었는데요. 차별적·상업적 활용 금지, 보건의료정보 활용 원칙 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또 공청회 등의 시민사회 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제5조입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제2장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의 제1절이고요. 제1절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서……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집을 다 읽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절차, 이게 제정 입법이 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다 들어야 되고요 축조심의 하면서 조항별로 의원법안은 무엇이고 여기에 정부 대안은 무엇이고 전문위원 심사보고는 뭐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 쪽 개괄 설명한다고 해서 자료 보면 그 자료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설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법안을 오늘 정부가 제출한 걸로 하고 이것 관련해서 이후

에 우리가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이게 21대 때도 검토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측에서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 왜냐하면 법조문 전체를 우리가 검토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제가 조항과 조항의 명칭 정도까지 하고 그 안에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일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기본계획 조항이고요.

다음, 24쪽의 3항 그리고 25쪽의 4항으로 기본계획에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27쪽 제8조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은 역시 정책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쟁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7항까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제9조 사회적 영향평가 조항은 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책이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평가하고 공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역시 쟁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39쪽 제3장의 2절입니다. 보건의료정보사업 등입니다.

제10조에서 보건의료정보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수립·평가, 서비스 질 향상, 필수·공공의료·정밀의료 활성화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특별히 쟁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46쪽 8항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7쪽 안상훈 의원안의 제10조 보건의료정보 통합활용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보사업 10조로 통합하고 이 조항은 삭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제11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조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1항, 2항, 3항, 4항까지 그리고 5항, 6항, 7항 해서 58조까지 8개 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쟁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58쪽의 12조 비용부담 조항은 안상훈 의원안을 삭제하고 보건의료정보 비용 청구는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9쪽 제12조 2차활용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권철승 의원안을 많이 수용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2차 활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차활용 지원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차활용 기관에 대해서는 1·2·3항과, 또 2항에서 2차활용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6호에 걸쳐서 규정하였습니다.

61쪽 제13조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는 권철승 의원안을 수용하였고요.

62쪽의 4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철승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였는데요. 2차활용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기관에 신청하고 또 2차활용 지원기관 기준에 따라서 신청자의 자격, 목적 적합성, 권리침해 위험,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 및 제공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기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항 권철승 의원안.

다음에 64쪽 6항입니다.

권철승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2차활용 지원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 지정, 결합절차 및 결합 후 제공·반출 승인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8항입니다.

2차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료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후관리 및 위반 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4조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의 특례는 권철승 의원안을 수용하고 또 의료법, 생명윤리법의 적용 배제를 폭넓게 배제하는 문구는 삭제하여 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제1절 개인정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등에서 제15조 개인정보의료정보 가명처리 등에 대해서는 권철승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72쪽 4항입니다.

4항은 추가하여 개인정보의료정보처리자가 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보건의료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등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습니다. 역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다음, 73쪽 16조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 규정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74쪽의 2항 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1호 가명 처리 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호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호 단서에 따른 개인정보의료정보 처리 목적 및 보건의료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의 승인, 4호 가명정보 기관 내 활용에 관한 사항, 5호 가명정보 반출 및 제3자 제공 사항, 그 밖에 6호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기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78쪽 3항과 4항 역시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80쪽 제18조 공용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제3장 중 제2절 보건의료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제19조 보건의료정보 전송 요구에 대해서는 1항, 2항, 3항, 4항, 5항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크게 수용하였고 특별히 다른 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90쪽 제20조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역시 서영석 의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역시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92쪽의 제3항 그 밖에 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준용규정은 권철승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4항과 5항, 6항, 7항, 98쪽에 지금까지 안상훈 의원안의 삭제규정까지 해서 20조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98쪽 제21조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쟁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103쪽 제4장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삭제해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삭제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삭제된 조항들이 있고 142쪽까지 의원님들의 안에서 삭제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많이 왔습니다.

142쪽 제22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등입니다.

이 부분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쪽, 143쪽의 2항은 수정 수용하여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밖에 보건의료정보 생성·수집·저장·전송·연계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 보안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3항, 4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고요. 145쪽 5항은 권철승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제23조 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서 규정하였습니다.

1항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생성·교류 및 활용의 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한다’. 2항은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3항은 보건의료정보원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149쪽에 4항을 추가하여 보건의료정보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원에 이사회를 두고 1명의 상임이사, 13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항, 6항, 7항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제24조 공공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없고요.

152쪽 제25조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서 1항, 2

항, 3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제26조 수출 지원에 관한 조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제27조 전문인력 양성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1항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과기부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2항, 3항 그리고 4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159쪽 28조 실태조사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 제1항 ‘국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정보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2항, 3항은 역시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161쪽 4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제29조 국제협력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1항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후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 주체를 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는’이라고 하여서 과기부의 국제협력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수행이 필요하므로 수행 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권칠승 의원안의 30조는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실효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고요.

그다음, 172쪽 제30조 디지털 헬스 정책지원센터의 지정·운용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175쪽 보칙과 별칙과 부칙이 남았는데요.

제5장 보칙은 안상훈 의원안 제36조 채용의 조달은 제3조로 이동하여 규정하였고요. 제31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는 권칠승 의원안을 수용하여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2항, 3항, 4항이 있고 178쪽 4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보건의료정보처리자 등이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제3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및 시정조치 대상에 2차 활용 관련 위반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조에 ‘12조부터 21조까지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했다고 판단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제33조 청문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였고 또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제34조 권한의 위탁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184쪽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고요.

그다음, 185쪽 제6장 벌칙입니다.

제36조 벌칙 조항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1호 ‘20조 4항 3호를 위반한 자’, 2호 ‘23조 7항을 위반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제37조 양벌 규정입니다.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제38조 과태료 조항은 권칠승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부칙입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 중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은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였습니다.

195쪽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은 권칠승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여 1항에 보건의료기술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다음에 담았습니다.

197쪽 제5조 개인 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는 서영석 의원안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98쪽 제6조 개인 보건의료정보 중개전문기관의 경과조치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중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200쪽이 되는 제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좀 길었고 약간 그렇긴 했는데 이게 21대 때도 제정됐다가 진행이 안 됐고 22대 때 다시 진행이 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든 데까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이제 좀 길게 논의를 하실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능과 정보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 이 법에서도 안전한 활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정보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 보호와 정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

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의사결정의 구조가 상호 연계되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돼야 하는데 현재는 1개 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다 다루도록 하고 있고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핵심적인 실행기관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가 소위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이 어떻게 하면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기관이 이해상충을 피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 법안 안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병원의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어떤 특정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이 연구와 관련해서 정보를 활용했다고 연구계획서를 냈을 때 그러면 이게 이해상충이 있고 재척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재척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맞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그 기관보건의료정보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 재척, 독립성의 유지와 관련된 제도 장치가 충분하냐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기관정보위원회가 이 말씀드린 요건을 갖춰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해서 누군가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행 기관이 있어야 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산업 육성과 정보 활용 측면의 반대쪽에서 균형을 잡아 주는 주체여야 해서 사실은 여기 정보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정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정 1개 위원회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법에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인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표준화하고 정보 교류하고 인증 시스템 하겠다고 한 게 벌써 한 십몇 년 됐잖아요. 복지부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십몇 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인증 등의 정보 교류 등을 정책적으로 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윤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표준화는 어떻게 될 거며 정보 교류는 어떻게 될 거며 EMR 인증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 법 시행 전후의 차이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에 인증이요, 23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등이라고 하는 조항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기술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만으로 의료기관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표준에 기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인증받아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표준에 기반한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쓰도록 하기 위한 소위 미닝풀 유즈(Meaningful Use)라고 하는 것을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해 왔고 거

기에는 미국의 연방 보험공단인 메디케어의 수가에 엄청난 가산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조항은, 예를 들면 인증된 EMR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적·재정적 요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조항은 들어가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제 전자의무로 그게 표준화, 인증된 시스템의 사용, 정보 교류를 실질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안 됐던 일을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새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말 길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이 문제는 쟁점이 좀 뜨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보건의료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정부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많은 의견들을 들어 왔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마련된 정부안을 놓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한 번 더 취합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그동안도 고생했지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법안 심의를 할 때 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그건 아직,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것으로 같음할지 그것은 백종헌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이게 쟁점이 워낙 많은 법안이고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흥의 차원이 있고 또 우리가 규제의 차원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AI 활용법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보는 사실 이런 데이터가 유출되고 오남용됐을 때는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진흥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의 차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가 보험회사로 갔을 때, 아까 연구자가 보험회사의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해상충을 넘어서서 어떤 돈이 오가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보건 안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다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청회를 의원실과 정부 차원에서 했겠지만 이거를 그 차원으로만 우리가 그냥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보 차원에 있어서의 부분들까지도 고려한다면 더 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아동수당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우리가 대화 속에서 그런 표현도 오가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나 이런 것들이, 거부권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민감한 정보가 또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험회사로 가게 되고 또 고용이나 취업에 악용되게 된다면 이건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관련한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공청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하신 거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사할 기회도 갖지 못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의원실에 한 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좌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꼭 열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것도 우리 소위에서도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심사하고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없애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 가운데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다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게 대수를 넘어서 검토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계속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속도감 있게 하되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지금 제시된 문제,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일독을 했던 이유도 적어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도 좀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부처도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하게 상의해서 다음에는 좀 밀도 있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서영석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저도 후반기에 복지위가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이게 21대 때도 논의가 됐었네요, 21대 때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22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 법안 제안이 됐을 때 이게 제정 법이면 국회 차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하고는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정부 측 말고요.

원래 제정안의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원래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나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수진 위원 간사님들과도 상의하신다면서요?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백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 데이터가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정보의 집합이나 사실 나열이 아니고 의료진의 판단이 포함된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환자가 정보의 주체이면서도 동시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물이니까 저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자로 정의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충분히 의견 개진들이 된 것 같고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각을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일단 법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차원도 그렇지만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다가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2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필수의료기기에 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기기 분야의 부처별 소관 사무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서영석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공급내역 관리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임상 지원,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 등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요건은 지정의 적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첫째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두 번째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세 번째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서영석 의원안은 첫 번째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두 번째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협의체의 설치·구성 방식과 세부 사항의 법률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장·위원 구성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진숙 의원안은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협의체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은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갱신 자료제출 요건 완화 및 적합성 인정 유효기간 적용 배제 특례는 공급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유통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의 대상 의료기기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식약처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8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시면 5항에 약사법상 국가필수의약품과 같이 지정 요건을 선택적 요건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공동 지정 방식으로 했고 업무수행 주체도 공동 지정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10항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마련에 따른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의료기기 특례 조문은 배제하도록 수정 의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맨 마지막에 협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은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은 하위법령의 준비, 협의회 구성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궁금한 게 여기 협의회를 보면 협의회에 의장이 두 분이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식약처 차장하고 복지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의장이 두 분이라고 그러니까, 두 명인데 공동의장도 아니고 각각 의장이네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진행할 수 있는데 공동의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부의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의장으로만 해야 돼?

보통 회의체를 원만하게 하려면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있고 위원이 있고 이런 거지 의장을 이렇게 두 명을 나란히 놓으면 그 두 분 간에 뭔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원만하게 운영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보건복지부랑 상의하도록,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 붙어 있어요. 협의해서 해라, 협의 사항들이 다 있는데 굳이 협의회까지 이렇게 의장을 공동으로 해야 될 만한 이유 그거 하나하고.

밑에 보니까 다음 각 기관의 임직원인데 정보원이 뭐예요? 정보원 이렇게 돼 있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따로 있습니다. 식약처 산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내 얘기는 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써야지, 국가정보원도 있고 정보원이 한 둘도 아닌데. 법에 정보원 하고 써 놓으니까 이게 어디 정보원인지, 명칭이 정보원 하니까 무슨 정보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법령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정확하게 이름을 풀로 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법에 정식 명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앞단에 약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앞단에서 약칭 쓰기로 돼 있는 게 있구나.

하여간 의장 두 개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은 그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부랑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약사법이랄지 담배유통관리법 해 가지고 현재 공동의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양 부처 간에 협의할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의장·부의장 하면 안 되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꼭 그렇게 공동으로 의장·의장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의장, 식약처장 밑의 협의회인데 차장이 의장을 하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단이 부의장을 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왜 안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 때 일을 잘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서로 힘 싸움하듯이 굳이 그렇게 해서 올려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협의를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사법이랄지 타법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유사한 형태로 하였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의장, 부의장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동 의장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똑같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필수약품이든 필수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의 대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잘 알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또는 필수적인 분야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승인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가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보건의료의 방향을 수립하고 필수 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식품안전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도 필수의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의장, 부의장을 분명히 하고 의장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정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식약처 논의하는데 복지부장관이 맞다 그러면……

○한지아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문드릴 수 있는데 필수의료기기라고 규정된 기기들이 있지요? 몇 종 정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직 따로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기가 필수의료기기다라고 규정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스텐트랄지 인공혈관이랄지 인공판막 등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필수의료기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전에 미리 이러이런 종은 필수의료기기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해 본 내용은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의료기기국장 김명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공급 중단’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공급 중단 보급 품목이. 그래서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라든지 카테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대략 품목 수로 따지면……

○전종덕 위원 품목이 몇 종 정도 된다 이런 것은 아직 조사 안 된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400종 정도를……

○전종덕 위원 400종?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예, 400여 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 법 준비하면서, 시행령 준비하시면서 할 예정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공동의장 체제로 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공동의장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공동의장으로 하려면 그래도 직급이 같아야 공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쪽은……

○김기웅 위원 두 사람 다 1급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라고만 해 놔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1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보면 식약처 차장하고 보건정책의료실장……

○조배숙 위원 직급이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직급이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같은 1급이라면서요?

○조배숙 위원 같은 1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조배숙 위원 같은 급을 넣고.

글쎄요, 저는 이게 공동의장으로 한다는 것이……

○김기웅 위원 고위공무원단은 1급부터 3급까지예요, 1급은 아니예요.

○조배숙 위원 예?

○김기웅 위원 정확하게 1급은 아니라고, 사실 답변은 저렇게 하시지만. 차장님은 정확하게 1급인 거고 고위공무원단 보건복지부는 사실 1급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급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급이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직급이 정확하게 같아야 공동이지요. 어떤 같은 입장에서 발언권도 공동이고 한데, 직급이 차이가 나면 말은 공동의장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김기웅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보태면, 공무원 사회를 얘기하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그냥 3급 공무원 승진한 사람 바로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3급에 해당하는 고공단을 지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법으로만 따지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가급이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 말씀은 그런 뜻인 거지요. 사실 차장님은 정확하게 1급이잖아요. 거의 1급 이상의 급을 가지고 있는데 급수도 다른데 같이 공동의장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진숙 위원 제가 같은 연장선상이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저는 식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냈는데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차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랬을 때, 공동의장을 선임했을 때의 기준점을 어떻게 해 오고 있고 회의 진행상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혹시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법이 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담배 유해성 정책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차장이 의장이고 또 보건정책실장이 똑같이 공동의장인데요. 회의할 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식약처 차장이 할 때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정책실장이 사안, 의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우리가 보통 공동의장을 세웠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기본원칙은…… 같은 급에 맞춰서 지금 세우시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전진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따로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기웅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동의장이 생각이 같으면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생각이 다르면 사실은 회의가 엉망이 되는 거지요.

○전진숙 위원 회의가 엉망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되지 굳이 둘을 세워서 복잡하게 의장을 둘씩 앉혀 놓고 하느냐…… 누가 사회 보세요? 이번에는 당신. 그러니까 일을 번거롭게 하는데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 식약처가 있고 별도 중앙기관이 있다 보니 서로가 눈치를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라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것도 위아래가 분명히 있어야지.

○소위원장 서영석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식약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실장이 같이 공동의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한지아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공동의장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아마 식약처가 잡아서 온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직책상 맞는지에 대한……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거여도 제 의견은 보건복지부가 전체 보건의 지형과 정책을 하는 차원에서 의장은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처장이 부의장이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

지만 다른 데도 보니까…… 그러면 공동의장은 하지만 지금은 차장과 실장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필수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장과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하는 건데 이 의요기기법에 따르면 필수약품이든 다른 것, 원래 차장과 복지부차관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장을 우리 대한민국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이런 공동의장 체제가 있었고 또 실무 부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부 의견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위원회 공동의장을 지금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을 같이 갖고 가는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전진숙 위원 그런 게 여기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한지아 위원 지금까지의 선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공동의장을 한 선례는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지정 주체가 누구예요? 필수의료기기 지정 주체 할 때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식약처장입니다.

○김기웅 위원 지금 이쪽 안에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안의 차이가? 이게 단순히 의장 공동의 문제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식약처장이냐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냐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협의회에서 그것을 지정하려고……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누군가는 결재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체인 거고, 회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물론 회의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문을 띄울 때 공문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느냐.

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거기에 통보할 때 복지부장관·식약처장 공동 명의로 나갑니까, 아니면 식약처장 명의로 나갑니까? 실제 중요한 거라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식약처장이 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복지부가 끼어들지는 않잖아요. 협의 대상일 뿐이지 최종적인 필수의료기기 지정·통보는 식약처장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김기웅 위원 그런데 여기 법에 보시면, 검토의견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2개의 의원 입법안이 있는데 전진숙 의원님 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돼 있고 지정 주

체가, 서영석 의원님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지금 대충 ‘그게 그겁니다’ 하지 마시고, 주체는 누구고 협의해야 될 관계부처는 누구고, 협의회에서 양쪽을 막는 것은 협의 과정에서만 하는 거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때 이때 다르고……

지금 서영석 의원님 안을 받으면 주체가 둘이라니까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그러면 나중에 그 기관의 문서로 공문을 띄울 때 나가는 공문 명의를 식약처장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장관 밑에 식약처장 같이 공동명의로 나가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됐을 때 공동으로 집니까, 부처가 다 두 군데서?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져야 돼요. 책임이 분명해야 일에도 이게 있는 거지. 같이 협의해서 했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간단한 공동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임의 귀속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데 ‘같이 했습니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책임을 미룰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분명하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소위원장 서영석 남인순 위원님.

○전진숙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전진숙 안과 서영석 의원안이 다른 거를 가지고 수정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우선 남인순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차장님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남인순 위원 지금 수정의견으로 나온 것은 분명하게 식약처가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협의 대상인 거지요? 주체는, 이것을 결정하고 결재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식약처가 하는 것이고. 이게 식약처법으로 나온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남인순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지정은……

○남인순 위원 왜냐하면 수정의견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애초에 서영석 의원님 안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식약처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의 정리가 분명하게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차장님?

○김기웅 위원 아닌 거 같은데……

○남인순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수정의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7항에 보시면 원래 서영석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들어가 있는데,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식약처가 주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남인순 위원** 협의를 하지만 식약처장이 중심이 돼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 뭐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협의회를 구성할 때 공동의장으로 한 이유는 식약처는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지정·해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그 이후의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나 사업 지원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행정적으로도 같이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 지정 이런 부분은 식약처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등재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형태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 이후의 행정 절차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견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체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근데 복지부도 여기에 동의를 한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맞습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가필수약품 지정 제도 관련해서 직책상 우리가 법에서의 어떤 공동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특히나 행정 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은 의장으로 갖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을 조금 논의한 다음에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원래 제 안은 식약처가 중심이 되고 식약처장이 이틀테면 필수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에 보면 식약처장이 어쨌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에게 생산·수입 확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체는 식약처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자꾸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금 더 어필을 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정확하게 책임지고 가야 되는 기관으로 맞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는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제 의견이 맞지요? 차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보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수용한 것입니다.

○**전진숙 위원** 그러니까 같이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각각의 필수의료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을 하고 식약처는 식약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건 아니지요.

○전진숙 위원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식약처가 중심인 거고 복지부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책임의 주체가 약간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문구 자주 수정을 하고 수정안을 내신 이유가 뭔지, 그러면 결국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일단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처장이 함께하도록 지정한 이유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두 기관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게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약사법에서 필수약품 관련 지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따와서 조문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잠깐 질문.

차장님, 공동 소관 업무라고 하는 것하고 주무부처가 있고 협의하는 게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이라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중심이 잡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님도 공동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협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심이 있고 협의하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걸 정리를 해 주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실무적으로 볼 때 주된 기관은 식약처가 되겠지만요. 필수의료기기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지아 위원 근데 필수약품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필수의료기기로 지정된 다음에 보험 수가를 한다거나 그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심평원이 진행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복지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드린다면 국가필수약품에서 약사법에서 지정할 때 방식으로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공동 의장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필수의료기기만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처장이 공동 의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필수약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공동 의장을 하고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것은 보건복지부 실장과 식약처 차장이 공동 의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식품안전처차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필수의료에 관련된 부분과는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 한지아 위원님 말씀처럼 김기웅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하니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사법에 있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법을 준용했다면서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님. 14페이지 3항에 보시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식약처 차장’, 두 번째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의장을 식약처장과 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차장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랑 같이하는 이유는 사실상 나중에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도 국이 여러 개인데 국장으로 해 버리면 한계가 국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장으로 하여금 책임성을 갖게 하고 식약처도 장은 아니지만 차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양쪽 장들을 의장들로 조금 더 책임 있는 분들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지금 협의회 의장이 무슨 책임을 진다고 책임을 나눠요. 회의체에서 결정한 회의 주재한 사람이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협의체는 협의체예요, 그냥. 심의해서 올려서 보고 올려서 사인 받으면 되는 거지 결재하고 공문 내보낸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회의한 사람들이 결과에 책임집니까? 그것은 그냥 진짜 밖에서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이것을 지정하고 지정이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지정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공동으로 하고 그렇지요? 밑에 보시면 수행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처가 공동으로 하고 다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궁금한 게 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어요, 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식약처장이 책임집니까, 복지부 장관이 책임집니까? 두 사람 다 집니까? 저는 그 부분이 책임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할 때 저도 많이 해 보지만 이분이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절차 해서 그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고 그쪽 도움이 필요하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일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지정도 같이 공동으로 하게 하고 공동으로 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일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책임을 나눠 가지고 도대체 의사결정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냐고, 이 중요한 일을.

계선은 분명해야 되고요. 협조는 또 분명해야 되고 책임도 분명해야 돼요, 나랏일은. 막 섞어서 뭔지도 잘 모르게 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소위원장 서영석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식품의약처에서는 허가·공급 이런 것에 권한이 있고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따라서 보험 등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결정된 것 이행을 해서 보건복지부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면 다 처리가

되는 것이지 꼭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회의를 해야 그걸 해 주느냐 이거지요.

모든 부처의 일이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했으면 각 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고 부처가 움직여 줘야 되는 거지. 그 부처가 다 이해가 있어서 움직여 줘야 되니까 다 회의에 들어와라, 공동으로 하자 그게 어떻게 정부 부처예요 그게?

정부 부처는 하나잖아요, 전체가. 그럼 여기서 결정했으면 다른 부처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안 따라줄까봐 무서워서 같이 들어와서 회의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관계된 사람 자기 일 다 나눠져 있으면 다 들어와서 같이 일해야 되나? 지정을 같이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조배숙 위원 근데 잠깐만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기존의 약사법에 국가필수 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했는데 잘 굴러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최초의 발의자인 전진숙 위원님께서서는 식약처로 딱 해서 했는데 법이 있으니까 또 선례가 있으니까 이걸 변형하니까 지금 헛갈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가 혼동이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수정의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의견 8페이지 제2조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 보건복지부장관 그다음에 식약처처장이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니까? 그대 놓고 여기 설명을 보면 지정주체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7페이지에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7항에 보면 여기는 또 ‘처장은 협의 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관하여—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식약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결정된 것을 제조업자 수입업자한테 국가필수의료기기로 뭐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제조 관련자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식약처는 집행기관이라는 뉘앙스로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경우 식약처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식약처만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거지요. 특히 재정적 지원의 경우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보건복지부를 몰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예, 저희가 하는 부분은 행정적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이라든지 재정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복지부 산하……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어떤 한 기관으로 한정하기가 또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또 선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약사법에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공동 의장으로 되는 걸로……

○조배숙 위원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수 의약품 지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나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약사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약사법도 유사한 체계로 돼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유사한 체계로 돼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우영택 예, 거의.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다시 정리를 해서요. 약사법도 한번 다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때 다시 심사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약사법에는 명확하게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사법에 돼 있던 것을 준용해서 여기다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럼 약사법의 규정도 바뀌야 된다는 거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용해서 한 건데 갑자기 핵심 주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책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단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비교한 것에 보면 ‘지정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처에 공동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공동 그런 것들 다 해결되고 책임 소재도 정확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던 것을 새로운 양식을 만든 건 아닌데 방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체의 문제는 분명히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문구 수정을 다시 해서 가져와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문구가 수정이 되면 그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전진숙 위원 일단 준비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4항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영업자·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물 삭제, 반품·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화장품의 생산·유통 근절 및 수출 규제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품을 해외에서 모방·위조한 제품이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데 따른 피해를 줄이고,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명 주체·기준의 명확성과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체계와의 중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지식재산처와 수사가 중복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체계 간 중복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관리협의회를 두고 있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법률과 유사한 기관이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3페이지, 추가적으로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서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식약처와 협의해서 6페이지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에서 식약처가 지식재산처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은 5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식약처가 지식재산처의 협의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부칙에서 기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시행일과 맞추어서 시행일을 수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회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회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회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입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의 투명성,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한국 희귀의약품 무상제공의 법적 근거를 규정할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해서 법률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제47조를 개정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GMP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정지를 신설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반복적으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관련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잘못 작성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합판정 취소·효력정지·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정안은 정안은 GMP 적합판정 취소 외에 효력정지 처분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효력정지 도입에 따른 처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처분은 시정명령, 적합판정취소 두 종류의 처분만 있어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 경중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인 적합판정 효력정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처분기준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안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기록의 미작성·미보존과 반복적인 거짓·잘못 작성에 대한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작성대상 문서는 안에서는 안 제2호에서는 제조기록서·시험성적서로 제시하고 있고 안 제3호와 제4호에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적합판정 취소처분을 피하기 위한 반복적인 미작성·미보존은 반드시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반면, 거짓·잘못 작성은 취소 외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간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행일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므로 시행일을 단축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3개월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식약처는 1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시행일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식약처에서? 부칙에 시행일 이게 지금 3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6개월이나 의견들이 있잖아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현재 1년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웅 위원 식약처는 1년 계속 해야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김기웅 위원 단체에서 지금 3개월로 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런데 6개월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6개월 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김기웅 위원 저는 식약처에서 6개월이 가능하다고 하면 단체하고 조합을 해서 하여튼 6개월로 하는 걸 저는 일단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조배숙 위원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 6개월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그리고 제35항부터 제36항까지 5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부칙에서 시행일이 어떻게 정리를……

○김기웅 위원 6개월이요.

○이수진 위원 6개월이라고……

○조배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식약처는……

○전종덕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수정의견에.

○김기웅 위원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로 향후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

○조배숙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1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김윤 위원 입장을 좀 바꾸셨어요.

○소위원장 서영석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간이검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응낙의무를 부과하며,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소변 등을 이용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업무상 마약류에 접근하기 쉽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투약을 조기에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약류 검사제도의 필요성을 유사 입법례의 목적 및 검사대상의 직무상 특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인·경찰, 항공종사자, 승무원, 운전자에 대한 마약류검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과 불법 투약에 따른 부적절한 취급·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리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의적인 민원·제보나 단순한 정황만으로 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사불응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요건,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넷째입니다.

검사응낙의무와 벌칙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키고 하위법령 위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검사방법을 안 41조의2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같은 조 3항에서는 검사절차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의견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통일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식약처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8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41조2, 검사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을 했고 그리고 3항은 제41조의2제1항과 같이 위임형식을 통일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궁금한 게요, 원래 어떤 불법마약류의 불법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한민국 누구든지 그 검사를 받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지금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해서 해야 됩니다.

○한지아 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영장 없이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아무래도 일단 검사할 수 있는데 불응했을 경우에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벌칙은 지금 보니까, 어떤 거였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불응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한지아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다양한…… 제조자, 수출입업자, 의사, 약사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 건가요? 물론 마약류 취급자들의 파장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영장……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장 없이 그냥 검사를 하라고 그러면 받아야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벌칙금을 낸다는 게, 그러면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선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법이라든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취지로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급자입니다.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 모든 걸 다 통합하게 하는 거고 이 법안에 약사회의 의견을 주셨듯이 좀 더 구체화하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상당한 사유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자가, 어떤 분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이것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가서 입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검사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요, 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인들이나 환자의 제보가 있을 때 마약 투약이 진짜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마약 취급자나 업무종사자가 의료시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투약하고 있다든지…… 이번에

반포대교 사건이라든지 병원 내에서 사건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 동종의 전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로 엄격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남인순 위원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세 가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남인순 위원 세 가지 외에도 또 있는 거지요? 일단 세 가지 대표적인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상당한 이유로 저희들이 실무 경험했던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관련해서는 하여튼 약사회나 의사사회 이런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드실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영장 없이, 수사의 영역 아닙니까? 아닌가요? 수사의 영역,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장 없이 진행하는 건데 이런 선례가 음주운전에도 있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항공안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차장님, 정부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법무부 의견은 어떤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별도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의견 문의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김기웅 위원 의견 없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김기웅 위원 이런 처벌과 관련된, 인신 구속이나 검사 관련된 것은 법무부에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 법 체계, 사법 체계하고의 정합성 같은 것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법제처와도 사전에 협의를 다 해 봤습니다.

○김기웅 위원 사전 협의할 때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측정을 요구한다거나 이것은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건이 그냥 ‘불법 투약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러면 이게 좀 추상적이라는 거지

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가지고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앞서 사례를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만들 때 관련 기관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도로에서 음주운전 측정하잖아요? 측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문은희** 지금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 법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경찰이나 군인처럼 공무원인 경우가 있고요, 민간인에게 마약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항공법에서 항공조종사나 승무원이 마약을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법에서는 대령으로 따로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냥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는 의사협회랑 병원협회 의견을 받아서 예측 가능하고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검사의 사유를 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단체들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배숙 위원** 대통령령을 만들 때 단체들이랑 협의를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문은희** 예.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하세요.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의사일정 38항을 설명했고요, 37항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일정 제38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대한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허가취소와 별도로 부당이득의 5배 이하(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에는 10억 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마약류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에 연계한 징벌적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게 되는데 그 대상으로는 첫 번째 마약류 취급제한, 두 번째 취급보고, 세 번째 처방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 마약류 품목허가 등의 미취득 또는 부정 취득을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과대상 및 적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정지·허

가취소와 병과되는 제재인 만큼 소규모 약국·의료기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징금의 상한 체계와 상한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익이 소액으로 확인되면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보다 법정상한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10억 원을 기본상한으로 하되 이익·회피손실액의 5배가 이를 초과하면 그 5배액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제재 및 몰수·추징과 과징금 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넷째, 가산금의 체납징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46조의2제5항의 체납처분 대상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금도 포함되도록 ‘과징금’을 ‘과징금과 가산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식약처와 협의해서……

○소위원장 서영석 마저 해 버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2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실 공표는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과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표사항은 대통령령, 방법·절차는 총리령으로 각각 위임하고 있으므로 약사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46조 1항에서 3개월 미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업무정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제46조의2,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하고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배액으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5항입니다.

체납처분 대상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포함하도록 했으며 7항,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 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46조의3 1항, 공표할 사항과 공표방법·절차는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한 가지 좀 여쭙습니다. 공표제도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공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위반이 확정되면요?

○한지아 위원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 대상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지아 위원 보니까 약사회도 그렇고 병원협회도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의료기관 전체가 그것 때문에 신뢰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만들 때 조금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꼭 의견을 듣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자가 법률상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영업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숙박업·노래연습장업의 영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체육시설업과 게임제공업 등을 위반 통보 대상 영업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체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위반 통보 대상이 되는 게임제공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영업소를 갖춘 영업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온라인게임 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셋째는 통보를 받는 관할 행정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의 등록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게임제공업은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된 통보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체육시설업을 통보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에 관하여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마약 확산 위험도가 높지 않고 현재까지 관련 범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시설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개정안의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44조의2제4호 체육시설업을 통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5호 게임제공업의 범위를 물리적인 장소만 갖춘 영업으로 수정을 하실지 그것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우선 정부 측 의견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저희가 문체부의 신중검토 관련해서 과거에 골프연습장이랄지 스크린연습장, 당구장에서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포함시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요, 문체부는 신중검토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부처가 의견이 다르니까 여기서 결정해 달라는 얘기…… 해 달라는 얘기네, 해 달라는 얘기.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나머지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식약처는 필요하다는 의견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위반사항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문체부 의견도 있긴 하지만 체육시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통보 대상에 포함할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조항에서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도 물론 업장이 있는 경우는 통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범위에서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가 된 거고.

문체부 의견이 44조의2 4호을 뺄 건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5호는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문체부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이걸 누구 의견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문은희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체육시설업은 통보 대상에서 빼 달라는 거고 게임제공업은 물리적 영업소가 있는 곳만 통보해 달라는 의견이어서, 지금 안이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임제공업은 수용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체육시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의 마약 취급이나 이런 전력들을 고려할 때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 보면 게임업계가, 집에서 온라인게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특정 안 해주면 너무 광범위해져서 얘기하는 건 일리가 있고요. 실내, 그러니까 공간이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곳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 PC방 같은 것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체육시설도 야외 축구장, 파크골프장에서 마약할 가능성은 적은 거고요. 그런데 사실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도 그렇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하니까 실내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시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또 앞으로 예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의미는 있으니 문구를 그냥 ‘체육시설’로 하지 마시고 아까 물리적으로 돼 있는 게임시설 이렇게 하듯이 일정한 실내공간에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는 곳, 그러니까 체육시설 개념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안을 만들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체육시설 하면 골프 치러 간 사람들, 골프장까지 다 해야 되잖아. 이걸 너무 크다 이거지.

○소위원장 서영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조 2호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체육시설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장 문은희 마약정책과장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운동의 종목으로서 구분하는 방법과 시설, 형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동 종목은 운동의 종목을 다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이런 식으로 운동의 종류를 다 나열했고요. 두 번째, 시설의 형태로 나열을 한 것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제가 법안을 제안한 개정안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게임제공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물리적인 영업소를 갖춘 영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단 체육시설과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식약처 마약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형태에 의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 형태도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폐쇄적인 실내에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 그걸로 문구를, 어떤 문구가 좋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2페이지, 검토사항 첫째 보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개정안이 오늘 문체위에 상정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가면 되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면 쉽게 지붕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실내의 체육시설이라고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지붕이 있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실내 체육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야외는 빼 버리고.

○이수진 위원 실내 체육시설도 배드민턴장, 탁구장……

○김기웅 위원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가능성 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실내 체육시설에서만 폐쇄적으로……

○김기웅 위원 하여간 조문을 만들어 봅시다, 계속해서.

○조배숙 위원 아무튼 다음에 적절한 단어, 개념을 생각해서 다시……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약처 의견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얘기한 단어나 개념을 생각해서 다음에 그것 적당하게 맞춰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2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방금 조항은 빼는 거예요?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요, 39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명확하게 39항……

○소위원장 서영석 37항, 38항은 통과가 됐고 39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자구 수정을 요구했던 32항·33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자구 수정을 배포해 드렸나요?

(「가지고 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식약처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의료기기국장입니다.

먼저 나눠 드린 자료 첫 번째 쪽을 보시면 약사법하고 문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의료기기로서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전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나눠 드린 것의 세 번째 쪽을 보시면 의장 구성인데요, 이것은 약사법하고 똑같은 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항 2호에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약사법이 잘됐다고 자꾸 따라하지 마세요. 잘된 것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약사법도 고쳐야 될 것 같아. 나랏일을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약사법부터 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례를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선례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인순 위원 나중에 개정안 내세요.

○김기웅 위원 개정안 낼 텐데 하여간에…… 어떻게 이렇게 책임이 불분명하게 일을 해요, 법에서? 약사법 따라가는 것만으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소위원장 서영석 그래도 어찌 됐든 그동안 약사법 준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식약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김기웅 위원님이 차후에 개정안을 약사법하고 다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약사법은 개정 같이 해야지.

(웃음소리)

○소위원장 서영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32항, 제33항 이상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기웅 김 윤 남인순 朴芝源 서영석 이달희 이소희 이수진 전종덕 전진숙
조배숙 한지아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임혜성

복지정책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박창규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첨단의료지원관 최경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임시회의록